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3
----------	--------

제안년월일 : 2022년 09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법률고문의 소송대리나 금지 대상에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을 삭제하고, 법률고문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소송대리나 금지 대상에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을 삭제함(안 제3조 제3항).
-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안 제7조제1항 단서 중 “원칙적으로”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업무)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제7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업무)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u>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u>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조(위촉)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u>공개모집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u></p> <p>제7조(임기) ① ----- ----- ----- ----- ---- <u>정하되, 연임횟수는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업무)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u>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시장</u>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조(위촉) ③ ----- ----- <u>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u> ----- ----- ----- -----.</p> <p>제7조(임기) ① ----- ----- ----- ----- ---- <u>정하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과 그”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시장”으로, “장이”를 “장,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한다)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렴서약)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5조의3(사전신고 등) ① 법률고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위촉 전 경력,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신고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2호 중 “기피한”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정한다”를 “정하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업무)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u>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u></p> <p>2.·3. (생 략)</p> <p>② (생 략)</p> <p>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u>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5조(위촉)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p> <p>1. ~ 5.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조(업무) ① ----- -----.</p> <p>1. ----- ----- <u>그</u> ----- ----- -----</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u> ----- ----- - <u>장,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이</u> ----- -----.</p> <p>제5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u></p> <p>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학회·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u></p> <p>제5조의2(청렴서약) <u>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u></p>

<신 설>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5조의3(사전신고 등) ① 법률고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위촉 전 경력,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신고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  
-----  
-----.



<p>1. (생략)</p> <p>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u>기피한</u> 경우</p> <p>3. ~ 7. (생략)</p> <p>제7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u>정한다</u>.</p> <p>②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u> ---</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7조(임기) ① ----- ---. ----- ----- <u>정하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